


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

가전제품 설치·수리원 특징

가전제품 설치·수리원 정의

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,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

- ✓ 텔레비전, 냉장고,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해 주고,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시켜 주며, 오작동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나 납땜 등을 이용하여 수리

· **직업 예시**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, 가전제품 A/S 기사

주요 사고유형

텔레비전, 냉장고, 세탁기 및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·수리 작업 중 떨어짐, 감전사고,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및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노출됩니다.



떨어짐(추락)



부딪힘



요통 등 근골격계질환



고객의 폭언 등

업무 특성

- 1 서비스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현장에 직접 나가 활동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.
- 2 현장 파견 수리원의 경우 고객의 약속시간에 따라 유동적이고, 다양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.
- 3 낯선 고객과의 접촉이 많아 마찰, 폭언·폭행, 범죄 등에 노출되기 쉽다.
- 4 계절별 가전제품 설치·수리 물량이 달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다.



주요 작업 및 유해·위험요인



상차 및 하차

작업내용 · 가전제품을 설치장소로 옮기기 위해 인력이나 운반설비를 활용하여 운반

유해 위험요인 · 화물 사이에 손, 발 등 신체일부가 끼임
· 화물을 발 위에 떨어뜨림
· 화물을 들어올리다 허리를 다침



설치·수리

작업내용 · 판매, 판촉물품을 옮기기 위해 인력이나 운반설비를 활용하여 운반

유해 위험요인 · 에어컨 설치 등 고소작업에 의한 떨어짐
· 배관 용접 시 화상·화재 등
· 가전제품 설치·수리작업 시 감전



주요 재해사례



떨어짐



에어컨 실외기 설치·수리 및 점검 시 추락

예방 대책

-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 또는 비계 사용
-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모,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
- 실외기 설치 구조물의 고정 상태 사전 확인



화재 폭발



고압산소로 실외기 기밀시험 후 용접작업 중 폭발

예방 대책

- 화재·폭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불활성가스(질소 등) 사용
- 가연성가스가 불활성가스로 완전히 치환된 후 용접 실시
- 보안면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



감전



활선상태의 전선을 가위로 절단작업 중 감전

예방 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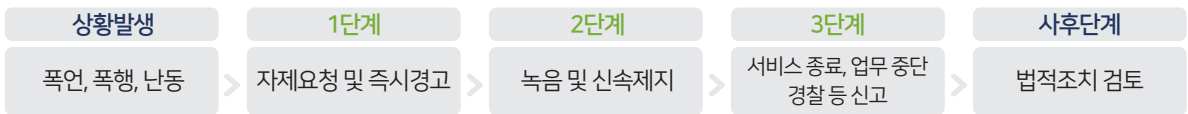
- 가전제품의 설치, 점검 및 수리작업 전 전원 차단
-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및 전선 피복 상태 확인
- 눈 또는 비가 올 때 에어컨 실외기 등 야외 가전제품 수리 금지



사망사고 예방 'Safety Alert Message(SAM)'

⚙️ 가전제품 설치·수리원

- ✓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, 작업발판이 구비된 고소작업대, 이동식 비계 등 사용
- ✓ 용접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 제거, 용접 불티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설치
- ✓ 중량물 운반 시 운반보조기구(이동대차 등) 사용, 2인 1조 작업
- ✓ 고객의 폭언·폭행 등 대응절차 알기



⚙️ 가전제품 설치·수리업자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

- ✓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
- ✓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
- ✓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
- ✓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
고객 등 제3자의 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

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, 휴게시간의 연장,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, 관할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·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소,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

관계법령 및 기술기준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), 제68조(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)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)
4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)제8항